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주야간보호시설 정원을 28명으로 하고,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1~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
 -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지역별 노모당, 마을회관 방문 홍보, 노인복지기관, 사회단체, 지인,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 3)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4.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 등)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월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야간보호의 경우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급여항목) -식사비용 : 점심(2,000원) 저녁(2,000원) 오전간식(500원) 오후간식(500원)

-의료비 및 약제비

-기타 (본인 및 보호자의 요구로 인해 구입하는 소모품 등)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몸 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향상활동,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훈련(옷개기, 요리하기 등)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몸씻기,머리말리기,옷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주간보호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몸 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등 나.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밖의 처치, 의사진료보조 등 다. 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라. 기타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도움, 언어치료 등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일상생활서비스지원은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3) 건강보험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4. 병원진 관에 보고한다.

